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133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가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중 각 '최종세액' 란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 중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5.부터 2014. 1. 7.까지 [redacted]구 [redacted]동 622에 있는 '제일상가' 및 같은 동 622-1에 있는 '[redacted]상가'의 각 상가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486,012,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① 신탁수수료, 용역비, 지적측량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법률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 합계 2,266,194,460원과 ② 매도인들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4,150,000,000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014. 10. 15. 위 총합계 6,416,194,460원을 원고가 신고·납부한 각 취득세 등의 각 과세표준 비율대로 나누어 각 과세표준을 그만큼 증액하는 방식으로 별지 <표> 중 각 '당초세액' 란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①항 중 신탁수수료, 용역비, 법률 및 감정평가수수료 합계 1,575,983,160원의 40%에 해당하는 630,435,264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2015. 5. 14.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합계 6,416,194,460원에서 630,435,264원을 빼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630,435,264원을 피고가 부과한 각 취득세 등의 각 과세표준 비율대로 나누어 각 과세표준을 그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별지 <표> 중 각 '감액세액' 란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2

정결정(이하 경정 후 별지 <표> 중 '최종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남아있는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매도인들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주었다는 전제하에 위 ② 항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실 원고는 매도인들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준 적이 없고 매도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의 돈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므로 위 ②항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②항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만큼 위법하므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해당 취득물의 취득가격은 취득세부과처분의 과세요건으로서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들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함으로써 간접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필요가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74(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피고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일부 매도인 양도소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2

는 매우 소액으로서 매도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매도인들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연 6.9% 이르는 고율의 이자인 점, 계약서 기재된 계약일이 모두 동일하며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도 매도인들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무인에 의한 것인 점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매도인들로부터 일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각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역시 일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율과 비교할 때 매도인들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고율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매도인들이 원고의 주주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이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일부 매도인들은 이 법원에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대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9)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의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 ②항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만큼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는 당초 원고가 신고·납부한 각 취득세 등의 각 과세표준 비율대로 나누어 각 과세표준을 그만큼 증액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도 위 ②항 합계 4,150,000,000원을 각 과세표준 비율대로 나누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2

각 과세표준을 그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취소하기로 하되, 그 범위는 별지 <표> 중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장인혜 출산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12

(별지)

〈표〉

취득일[1]	비율[2]	세목[3]	당초세액[4]	감액세액	최종세액	정당세액
13. 10. 15.	2.25	취득세	6,940,640	682,020	6,258,620	1,769,030
		농특세	318,100	31,250	286,850	81,070
		지교세	636,210	62,510	573,700	162,150
13. 11. 21.	87.99	취득세	268,870,510	26,418,270	242,452,240	68,547,160
		농특세	12,314,370	1,209,960	11,104,410	3,139,480
		지교세	24,628,760	2,419,930	22,208,830	6,278,970
13. 12. 12.	6.19	취득세	18,926,200	1,859,660	17,066,540	4,824,730
		농특세	866,810	85,160	781,650	220,960
		지교세	1,733,650	170,340	1,563,310	441,940
14. 1. 7.	3.56	취득세	20,724,930	1,053,780	9,671,150	2,734,280
		농특세	490,540	48,180	442,360	125,060
		지교세	981,090	96,380	884,710	250,120
합계			347,431,810	34,137,440	313,294,370	88,574,950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차례에 걸쳐 매수하였는데 각 매매거래일을 의미한다.
2) 단위 (%)
3)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 지교세는 지방교육세를 의미한다.
4) 단위 (원), 가산세 포함, 이하 각 세액은 모두 같다.